#붙임.1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만65세이상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 2018.10.1. 국토교통부 입주자저축에 관한 전산관리업무 지정기관 변경 고시에 따라 2020.02.01.부터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하셔야 하며, 미접수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방문신청 및 동·호수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6.(예정)]에 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 홈페이지(**http://gijang-elcru.com/**) 또는 대표번호 (051-731-1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추후 모델하우스를 사이버 모델하우스 또는 방문예약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1.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35-1외 9필지
   - 공급규모 : 지하3층~지상26층 2개동 총 219세대(일반분양 100세대)
   - 기관 추천 특별공급(장애인) 대상 세대수 : 11세대

주 택 형	62㎡A	72㎡A	72㎡B	72㎡B-1	75㎡A	84㎡B	계	비 고
배정세대수	1	2	1	2	2	3	11	공급세대수의 10%내 배정
예비당첨자	3	6	3	6	6	9	33	배정세대수의 300%내 배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 일정 계획(예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21.04.16.(금)	견본주택, 홈페이지 (http://gijang-elcru.com/)
견본주택개관	2021.04.17.(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608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1.04.26.(월)	인터넷접수 원칙 / 08:00~17:30까지
당첨자(동호수) 발표	2021.05.06.(목)	http://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신청자와 동일하게 한국감정원 전산추첨 후 게시)
계약체결	2021.05.17.(월)~2021.05.20.(목)	당사 견본주택

※ 상기일정은 예정 일정이며, 관련 업무의 진행 사정상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 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특별공급의 경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단,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특별공급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2.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4.16. 예정)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등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단, 중소기업근로자 및 군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청약예금 : 해당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 예치금 기준액>

구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4.16.(예정)] 현재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 세대원의 범위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 공급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6(예정)]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6월)내에 있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 사업주체가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3.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6.(금))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 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구성원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동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내역발급 또는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필수서류	○		해당기관장의 추선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 고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 인감증명서 1통 추가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대리 신청자 신분증 및 도장	•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방문접수 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4. 특별공급 신청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붙임.2 기관추천 양식

추천 리스트

주택형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비 고

※ 예비 추천자 명기시 순번에 예비라고 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